

에티오피아 (Ethiopia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보험료율 (근로자 / 자영자 / 사용자)	7% / 18% / 11%	7% / 18% / 11%	-
연금수급 개시연령	60세	60세	-
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	10년	10년	-
노령연금 지급률 (40년 기준)	67.5%	67.5%	-
일시금	퇴직 전월 기본급 × 1.25 × 납부연수	퇴직 전월 기본급 × 1.25 × 납부연수	-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 및 현행법 : 1963년(공공부문 연금), 2011년(공공부문 연금), 2011년(사적부문 연금)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
 - ※ 공공부문과 사적부문연금은 동일한 규정을 따르나 별도 공공기관에 의해 운영됨

3 적용대상

- 공공부문 : 국회, 정부, 경찰, 군대, 공공부문에 고용된 에티오피아 국민
- 사적부문 : 사적부문에 고용된 에티오피아 국민
- 적용제외 : 가사근로자, 계절근로자, 국제기구 근로자 및 외교공무원
- 임의가입 : 자영자, 양자 또는 다자협정 적용에 따른 외국인

4 재원조달

- 가입자 : 기본임금의 7%
 - 기본임금은 근무시간의 업무에 대한 월 급여액
 - 가입자의 보험료는 산재급여의 재원이 됨
- 자영자 : 신고소득의 최대 18%
 - 자영자의 보험료는 산재급여의 재원이 됨

- 사용자 : 임금의 11%, 군인과 경찰은 25%
 - 사용자의 보험료는 산재급여의 재원이 됨
- 정부 : 없음, 사용자로서 보험료 납부

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연금
 -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인 60세 도달자. 특수직종에 대한 수급요건은 완화될 수 있음
 - 조기연금 : 보험료 납부기간이 25년 이상인 55세 도달자(일반인), 최소 한 번의 임기(5년) 동안 근무한 고위 정부관계자와 국회직원인 경우 50세 도달,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45세~55세(등급에 따라 다름) 도달자(군인 및 경찰)
 - 노령일시금 : 납부기간 10년 미만인 60세 도달자
 - 연금 및 일시금 모두 퇴직 필수
- 장애연금
 - 보험료 납부기간이 최소 10년이고 정상소득활동 불가로 판정된 경우 지급
 - 장애일시금 : 정상소득활동 불가로 판정받았으나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지급
- 유족연금
 - 사망자가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수급하고 있던 경우 지급
 - 유족범위 : 배우자, 18세 미만 자녀(장애가 있는 경우 21세), 부양 부모
 - 45세 미만인 여성 배우자의 재혼 시 연금중단(남성 50세, 장애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)
 - 유족일시금
 - 사망자의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 - 유족범위 : 배우자, 18세 미만의 자녀(장애가 있는 경우 21세)

6 급여종류별 지급액

- 노령연금
 - 퇴직 전 3년간 가입자 월평균 기본소득의 30%에 10년을 초과하는 납부기간 1년당 월 평균 기본소득의 1.25%(일반인) 또는 1.65%(군인 및 경찰)씩 증액
 - 월 기본소득은 정규시간동안 수행한 근로를 위해 지급되는 월 급여임
 - 월 최저연금 : 744 birr
 - 월 최고연금 : 퇴직 전 3년간 가입자 월평균 기본소득의 70%
 - 조기연금 : 노령연금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산정 됨
 - 노령일시금 : 퇴직 전월의 기본급에 1.25(일반인) 또는 1.65(군인 및 경찰)와 납부한 연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

○ 장애연금

- 퇴직 전 3년간 가입자 월평균 기본소득의 30%에 10년을 초과하는 납부기간 1년당 월 평균 기본소득의 1.25%(일반인) 또는 1.65%(군인 및 경찰)씩 증액
- 월 기본소득은 정규시간동안 수행한 근로를 위해 지급되는 월 급여임
- 월 최고연금 : 퇴직 전 3년간 가입자 월평균 기본소득의 70%
- 장애일시금 : 장애발생 전월의 월평균 기본소득에 1.25%(일반인) 또는 1.65%(군인 및 경찰)와 납부한 연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

○ 유족연금

- 배우자연금 : 사망자가 수급하거나 수급할 수 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50% 지급
- 고아연금 : 사망자가 수급하거나 수급할 수 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20%를 수급가능 자녀에게 각각 지급(완전고아는 30%)
- 부모연금 : 사망자가 수급하거나 수급할 수 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15%를 수급가능 부모에게 각각 지급, 기타 수급가능 유족 없을 시 20%
- 유족연금의 지급 총액은 사망자의 노령 또는 장애연금월액을 초과 할 수 없음
- 유족일시금 : 배우자에게는 사망자가 수급하거나 수급할 수 있던 노령 또는 장애일시금의 50%, 수급가능 자녀에게는 20%(완전고아는 30%) 지급
 - 유족일시금의 지급 총액은 사망자의 노령 또는 장애 일시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

7

관리운영기관

○ 공무원사회보장기관(Public Servant's Social Security Agency)

- 위원회 및 이사장의 관리를 받고, 공공부문연금제도 운영 및 재무부(Ministry of Finance)와 공동으로 보험료 징수를 담당
- <http://www.psssa.gov.et>

○ 사적부문 근로자 사회보장기관(Private Organization Employees' Social Security Agency)

- 3자위원회의 관리 하에 사적부문연금제도의 운영 및 보험료 징수 담당

<2019년 ISSA 자료>